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라 한다) 학칙 제57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학생” 이라 함은 본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중 ‘장애인 복지법’ 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본 대학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 입학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입학학생처장이 겸직하고, 센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장애학생지원위원회)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Committee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생활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사항
3. 장애학생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학생 관련 심의·결정 필요 사항

제9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업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조치를 서면으로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지원위원회는 심사·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